

2. 권리금 계약서 제4조 ②항 임차인 또는 신규임차인이 본 계약서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서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하여 신규임차인 윤미자는 권리금계약서 제4조 2항을 적용 2021 10 09 작성한 권리금계약을 해지하고 권리금 반환 청구

☞ 기 임차인((한유경)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가점포 및 시물 등 모든 상가 물품을 신규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나 이행지체 되어 영업도 못 하였으며, 지금까지 유형적 무형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.

☞ 결론

임차인은 한유경은 상기 권리금 2천만을 수령하고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가 내 시물 등 미 인도하고 있어 2021년 10월 09일 권리금계약서를 해지를 요청함과 더불어 2022년 5월 23일 기 지급한 총권리금 반환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 및 입금바랍니다.

내용증명 도달 기일 후 2022년 05월 23일 까지 권리금 미 입금시 본인은 지금까지 상가 점포 미 인도에 따른 영업손실과 그 상응 하는 손해배상 청구 및 권리금 반환소송을 진행함을 고지합니다.

2022 05 04

발송인 : 윤 미 자 윤미자